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213) 389-2077  
 For California Relay Service TTY: (800) 735-2929  
 www.mhas-la.org



공정 주거 (FAIR HOUSING):  
 바로 그 법!

*A nonprofit organization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legal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이 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 팁 #10 – 정당한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 섹션 8 및 위협을 통한 퇴거 조치

**세입자:** "얼마 전에 저는 임대인으로 부터 섹션 8 프로그램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90일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오직 SSI만 있어서 섹션 8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다면 아파트에 거주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섹션 8 담당 직원에게서 이사를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안내 받았지요. 장애 때문에 저한테 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저는 섹션 8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파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90일이 거의 끝나가는데 새로 이사 갈 곳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저는 홈리스가 될 것만 같아 두려워요. 장애 때문에 이사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걸까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주거법에 따라, 임대인은 심지어 임대 종료 절차 중이더라도, 장애를 가진 세입자를 위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고려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유효한 임대 종료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때, 정당한 편의 제공 계약은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귀하께서 섹션 8 바우처를 가지고 있고, 임대인이 섹션 8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원할 때 귀하의 임대인은 90 일 통지서를 귀하께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서 새로운 집을 찾기 어렵다면, 귀하께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서 이사 기한의 연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귀하께서 지역 임대료 안정화 또는 임대료 제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유닛에 살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섹션 8 참여 종료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취해야 할 조치:**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보려 했지만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장애 관련 필요에 맞는 유닛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편의 제공을, 귀하의 장애 때문에 이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치료 의료진(treating professional)에게서 귀하의 퇴거 기한 연장 요청과 귀하의 장애가 연관이 있다는 서한을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한의 사본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찾으려고 시도하신 증거와, 찾는데 지장을 주었던, 장애와 관련해서 겪은 구체적인 어려움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불법적인 점유 (퇴거) 소환장 및 고발장을 받으셨다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요청에 더불어 반드시 기한 전에 법원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한은 귀하께서 내용을 고지 받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귀하께서 퇴거 소환장 및 고발장을 개인적으로 제공 받으셨다면, 귀하께서는 귀하의 답변을 5 일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받으셨다면, 귀하의 답변 접수 기한은 좀 더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법원에서 답변서의 접수를 도와주는 셀프 도우미 센터가 있습니다. (참조 <http://www.courts.ca.gov/selfhelp-selfhelpcenters.htm>).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있도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상호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정 주거 기관,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부(DFEH), 또는 미국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HUD)에 불만(complaint)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HUD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http://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file-a-complaint/)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 표시는 연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사항:** 공정 주거법 이 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인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MHAS, 지역 공정주거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